

-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2. 6. 1.\]](#)
-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(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) 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[\[개정 2012. 6. 1.\]](#)

-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[\[개정 2012. 6. 1.\]](#)

제35조(전자문서 이용의 촉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,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[\[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5. 10. 1.\]](#)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 · 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[\[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5. 10. 1.\]](#)

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[\[신설 2012. 6. 1., 2013. 8. 6.\]](#)

제35조의2(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3. 3. 23.\]](#)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[\[개정 2013. 3. 23.\]](#)

1. 물류보안 관련 시설 · 장비의 개발 · 도입
2. 물류보안 관련 제도 · 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
3.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

[[\[본조신설 2012. 6. 1.\]](#)]

제35조의3(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13. 3. 23.\]](#)

- ②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물류보안 관련 공동연구, 전문인력의 상호파견, 물류보안 기술개발 정보의 공유 등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[\[본조신설 2012. 6. 1.\]](#)]

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

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

제36조(물류산업의 육성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 · 보관 · 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\]](#)

- ②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[\[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5. 10. 1.\]](#)

1.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